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55
------	-----

2012. 10. 8.  
재정경제위원회

##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0.8)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업무는 「발명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

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의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 중인 업무로서,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추진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 2. 위탁주요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1. 1 ~ 2015. 12. 31)
- 위탁업무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 소요예산 : 872백만원(2012)  
1,290백만원(2013)
- 선정방법 : 재계약(서울산업통상진흥원)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남중)

####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시행 이후 현재까지 해당 업무를 수탁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하 “SBA”)과 재계약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나.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의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2009년 4월 각종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서울지식재산센터’ (이하 “센터”)를 개소해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센터는 현재 2명의 변리사와 특허정보 컨설턴트 5명 등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보호, 특허정보 종합 컨설팅,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개소 이후 현재까지 1,467건에 대한 지식재산 확보, 74건의 지식재산 보호, 1,860건의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실적 등을 기록하고 있음.

〈표〉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실적

추진사업	지식재산 확보	지식재산보호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특허스타기업육성)	지역브랜드 가치제고	컨설팅(상담) 지원
'09~'11	1,291건	51건	1,646건	678건	1,919건
'12.9.28일 현재	176건	23건	214건	168건	500건
계	1,467건	74건	1,860건	846건	2,419건

- 시는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지원을 위해 특허와 관련된 각종 제도정비, 중소기업 특허개발 지원체계, 지적소유권단체와의 협의 등을 포함한 ‘특허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다. 민간위탁의 적절성 판단

- 최근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 특허분쟁 사례에서 보듯 최근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단순한 기업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간의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되면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기업과 특허 전문기업(patent troll)에 의해 천문학적인 로얄티를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은 단기간의 성과로 판단하기 곤란한 장기적인 투자효과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시가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를 종전과 같이 SBA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주요 수요층이 되는 중소기업의 접근성, 사업을 수행할 만한 경쟁업체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특히, 센터의 수탁업무 중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 등은 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SBA는 「발명진흥법」 제23조1) 규정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센터 운영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기관이 특허청으로부터 새롭게 등록절차를 마쳐야 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1)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생략>

③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 ⑪ <생략>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55
----------	-----

제출년월일 : 2012년 8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업무는 발명진흥법 제 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에 의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중인 업무로서,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사업추진 인프라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개요

- 사업명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13.1.1~2015.12.31(3년)
- 수행기관 : 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 이진영)
-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회 의거 재계약
- 소요예산 : 872백만원('12년도 기준)  
1,290백만원 ('13년도 예정) ※인건비 및 관리비 별도

## ○ 위탁업무('12년도 사업기준)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사업
  - 10인 미만 소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지재권 창출지원
  - 청년창업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집중관리 지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 확산 사업
  -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및 보험 지원을 통해 신속한 분쟁대응 지원체계 구축
  -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및 포럼·공모전 개최
- 특허정보종합컨설팅 (특허스타기업 육성)
  - 선행기술조사 및 맞춤형 특허맵 컨설팅을 통한 기업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국내·해외 출원비용지원 및 연구성과물 활용전략수립
  -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허스타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 브랜드가치제고사업
  - 중소기업의 브랜드 신규·리뉴얼 개발 및 권리화 지원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09.2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
- '10.3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 '11.3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 '12.1월 : 서울산업통상진흥원과 위탁협약 체결(재계약)

##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은 심판·소송, 특허정보컨설팅, 브랜드경영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관련 콘텐츠 및 조직, 인력 등 사업추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
-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09.2월)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 최근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관리가 강조되고 있어 지자체의 장기적인 지식재산로드맵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시정이해도가 높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민간위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11.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11.7),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11.1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 104조 제 3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 1항 제 2호, 제 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6조 제 6호

제 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산업지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나. 기 타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12.7.5 경제정책과-8299)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시장지시 사항(‘12.1.17)